

의안번호	2202690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4. 10. 29.
추 계 번호	24D23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억 2,300만원, 2030년 53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4억 4,400만원(연평균 42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의2 신설)	3,323	3,755	4,225	4,774	5,367	21,444	4,289

주: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덮개'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로 실제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소화 덮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옥내의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도 아파트 주민 등이 부담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뿔개’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적용례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에 2026년부터 신규로 설치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 덮개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소화 덮개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6년 1,065개소, 2030년 1,588개소로 추정
 - － 한국환경공단²⁾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4년 10월 현재 기준 9,180개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년대비 증가율 10.5%²⁾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정: 2025~2030년

(단위: 개소)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0,144	11,209	12,386	13,686	15,124	16,712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년대비 증가량)	—	1,065	1,177	1,300	1,438	1,5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소화 덮개 단가) 2026년 312만원, 2030년 338만원으로 추정
 - －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 2024년 기준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소화 덮개의 단가는 300만원³⁾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

2)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3년 9월 기준 8,309개소

3) 충청남도 당진시가 발주한 계약(‘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질식소화포 구입’)을 참고하면, 84개 구입에 2억 5,200만원으로 소화 덮개 단가는 300만원으로 추정

[표 3] 소화 텃개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소화 텃개	312	319	325	332	3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억 2,300만원, 2030년 53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4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a 개소)	1,065	1,177	1,300	1,438	1,588	—
소화 텃개 단가(b, 만원)	312	319	325	332	338	—
추가재정소요(=a×b)	3,323	3,755	4,225	4,774	5,367	21,4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덮개’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로 실제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